# 제5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09. 10. 30.(금) 10:3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
이경자 부위원장

송도균 위 원

이병기 위 원

형태근 위 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가. 성원보고

나. 국민의례

다. 개회선언

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
마. 전차회의록 확인

## 바. 의결사항

## 1) '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'(고시) 일부 개정에 관한 건 (2009-52-235)

o 박윤현 전파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'방송법' 제79조제1항 및 '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' 제26조에 의거한, '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'(방송통신 위원회 고시 제2009-2호, 2009.1.13) 일부 개정(안)을 심의하고, 원안대로 의결함.

#### o 주요 내용

-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, 보급형 가입자 단말장치를 도입하기 위해, TV 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입자 단말장치에 대해서 대역외 상향채널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 마련(개정 고시안 제34조 신설)

## 2) 「무선설비규칙」(고시) 일부 개정에 관한 건 (2009-52-236)

o 박윤현 전파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'전파법' 제37조(방송표준방식), 제45조(기술 기준), 제47조(안전시설의 설치), 제58조(산업·과학·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)에 의거한, '무선설비규칙'(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-22호, 2009.9.11) 일부 개정(안)을 심의하고, 원안대로 의결함.

#### o 주요 내용

- 출력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지상파 DTV 및 DMB의 대역외 발사강도 기준을 소출력에 한하여 규제 완화
  - ·(지상파DTV) 출력 10W 이하인 중계기에 한하여 완화된 대역외발사강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 마련
  - ·(지상파DMB) 출력 10째/地 이하인 특정 소출력 중계기에 한하여 완화된 대역외 발사강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 마련

## 3)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규정(안) 제정에 관한 건 (2009-52-237)

o 이재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, 행정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규제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'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규정(안)'을 심의하고, 원안대로 의결함.

#### o 주요 내용

- (사전심사 청구 대상) 청구인이 계획 중인 구체적 행위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결격 사유 해당 여부 등 법령 위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사실 관계 확인 업무(안 제3조)

- ·기간통신사업자 허가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(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2)
- ·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 심사 대상 해당 여부 확인(전기통신 사업법 제6조의3)
- ·KT 주식취득에 관한 특례 해당 여부 확인(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4조 제1항)
- ·주파수 할당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(전파법 제13조)
- ·위치정보사업자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(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)
- (사전심사 청구의 절차 및 효력) 청구인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위원회에 제출하며,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법령의 적용대상 인지의 여부를 통보 (안 제4조 내지 제8조)
- ·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위원회는 사후에 답변내용에 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음

## 4) 일몰제 적용을 위한 행정규칙 개정(안) 일괄처리에 관한 건 (2009-52-238)

o 이재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각 부처의 훈령·예규 등에 재검토 기한 또는 존속 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 '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'(대통령훈령 제248호, 2009. 5. 24. 시행)이 제정됨에 따라, 일몰제 적용을 위한 행정규칙 개정(안) 일괄처리에 관한 건을 심의하고, 원안대로 의결함.

#### o 주요 내용

- (개정 사항) '가입자 선로의 공동활용 기준' 등 총 84건(고시 68건, 공고 5건, 훈령 11건) 중 상위 법령에 위임 근거가 있어 계속적으로 시행이 필요한 83건은 재검토 기한 설정
- · 아날로그 방송 종료 안내문 부착에 관한 고시' 1건은 상위법의 존속기한(2013. 12.31.까지)과 동일하게 존속기한 설정
- (개정 방법) '본칙'의 마지막 조항에 일몰 규정 신설
  - ※ 위원회 의결 부담 완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괄 개정 방식으로 개정하고, 향후에는 각 행정규칙 내용 개정 시 일몰 기한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함.

### 5) WiBro 사업자의 허가조건 미이행관련 처리방안에 관한 건 (2009-52-239)

o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KTSKT 양사가 'WiBro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서비스 제공계획과 소요설비 조달 및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'하도록 한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'전기통신사업법' 제65조제1항에 근거한 시정명령 으로써 이행을 촉구하기로 의결함.

#### o 이행 촉구 내용

-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 지역에 실효적인 망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와이브로 사업자에게 'WiBro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서비스 제공 계획과 소요 설비 조달 및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'하도록 한 허가조건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, 미이행시 허가취소 등 제재를 할 방침
- 와이브로 사업자는 위 이행촉구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2011년까지의 서비스 커버리지 및 투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.
- ·양사 간 협의를 통한 사업자간 망 공동구축 및 로밍 방안 검토
- 와이브로 사업자는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이행결과를 2011년까지 반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.

## 사. 보고사항

## 1) WiBro 활성화정책 방향과 과제에 관한 사항

- o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, WiBro 활성화정책 방향과 과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, 원안대로 접수함.
- o 주요 내용
  - < 경쟁활성화 여건 조성 >
- WiBro용으로 분배된 2.36世 대역에서 8.75地 폭 또는 10地의 복수표준을 허용, 기존사업자가 주파수 대역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.
- 전국 또는 지역 신규사업자 허가 여부 검토, 로밍·기지국 공용화 방안 등을 통해 신규사업자의 진입 여건 조성
  - ※ 신규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.36 또는 2.56 대역을 인센티브 차원에서 우선 할당 검토
- MVNO 도입을 규정한 「전기통신사업법」의 개정 추이를 감안, 도입시기, 조건· 절차·방법 등을 검토하여 MVNO 적극 도입 추진
  - < 실효성 있는 전국망 구축 >
- 기존사업자 단독 또는 사업자 간 공동의 망을 구축하도록 하여 전국 주요 84개 시에 효과적인 망 구축을 추진
- 신규사업자(전국 또는 지역) 진입을 촉진하여 기존사업자가 기구축한 지역 이외 까지도 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
- ·실내 음영지역 해소 및 망 구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펨토셀(실내에서 사용되는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)을 통한 커버리지 확대 방안 검토

- 수도권망 및 지방망은 와이브로 서비스 '품질평가 기준'을 정립하여 끊김 없는 (seamless)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완을 유도
- 신규사업자와 기존사업자간 로밍 방안을 검토
- ·신규사업자의 경우 로밍의 범위를 WCDMA로의 확대 가능여부를 신중히 검토
- ·기타 로밍 제공 기간, 로밍 대가 등은 해외 사례를 감안하여 검토
  - < 와이브로 사업성 제고 >
- 무선인터넷 정액요금, 결합요금 등을 확대하고, 와이브로 탑재 노트북·넷북 이외에도 저가형 스마트폰, WiBroWiFi를 탑재한 결합단말기등의 보급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
- 사업자들이 WiBro망과 WCDMA망을 연계 활용, 무선 데이터 요금을 낮추고, WiBroWCDMA-WiFi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
- · WiBro 기반의 m-VoIP, m-IPTV 서비스 제공 여건 조성
- 스마트 그리드, m-텔레컨퍼런스, m-CCTV 등 파급효과가 큰 공공 서비스 모델 발굴·광대역 무선망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시범 구축, 관련 시스템·단말 개발 및 시범 서비스도 제공 추진

## 아. 기 타

## 1)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o 차기 제5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09. 11. 2.(월) 10:00에 개최하기로 함

# 6. 폐 회 (11:55)